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7
----------	-----

제출년월일 : 199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 방지(안 제2조)
- 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규정하여 기금 집행시 타용도의 사용 예방(안 제4조)
- 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안 제5조)
- 라.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 신설(안 제7조 내지 제8조)
- 마.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2조)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부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제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제64조제1항 및 영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일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파주시 소속 국장·실장·과장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을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난방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에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8
----------	-----

제출년월일 : 1999. 11. .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도로를 손케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사기, 부실시공,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손해자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을 경우, 징수금액의 3배를 징수토록하는 규정 삭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안)
제7조 (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